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탄핵 결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국가장의 대상에서의 제외〉
■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29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명선 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2. 16.
3. 회 부 일 :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는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집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따라 퇴임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장¹⁾의 대상자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조의2(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제2조에 따른 국가장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u> <u>1.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u> <u>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u>

개정안과 같이 국가장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였거나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1)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정부가 장례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 국장과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함.

확정된 경우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국가장의 목적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의 집행상 예우>

예 우	내 용
대 상	① 전직·현직 대통령 ② 대통령 당선인 ③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서,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 자
국가장 장례위원회	· 국가장 집행기관으로, 국가장 집행 시마다 구성 · 위원장 1인, 6인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 · 국가장 대상자 유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가능 ·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음 · 관장 사항 :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국가장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그 밖의 집행상 중요 사항
장례범위	정부 : 빈소 설치·운영, 운구·영결식·안장식 주관 지자체 장 및 재외공관의 장 : 분향소 설치·운영 가능
장례기간	5일 이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국무회의 심의로 연장 가능
장례비용	정부의 국가장 주관 비용은 국고 부담 ※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사십구일제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등은 제외
기 타	국가장 기간 중 조기(弔旗) 게양

현행 「국가장법」은 전직·현직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이하 “국가장대상자”라 함)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하지만 국가장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과장이 있었다는 점³⁾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나 내란의 죄, 외환의 죄의 확정판결 선고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장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장을 실시할지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므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다소 크지 않을 수 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 「국가장법」의 절차를 통해서도 대상자의 서거 시점에 유족의 의견, 국민적 감정, 사회통합 등을 고려하여 엄정

2) 「국가장법」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3) 실제로 지난 202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지지 않았음.

한 절차를 통해 국가장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현행 절차로도 개정안의 의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1

전직 대통령 장례 선례

<전직 대통령 국가장 실시 현황>

구 분 (대통령)	서거일시 (장례일)	장례종류	빈 소	분 향 소	안 장
				영 결 식	
이승만 (李承晩)	'65. 7.19 ('65. 7.27)	가족장	이화장	정동교회	서울 현충원
박정희 (朴正熙)	'79.10.26 ('79.11. 3)	국 장 (9일장)	청와대	舊 중앙청광장 지방 등 舊 중앙청광장	서울 현충원
윤보선 (尹潽善)	'90. 7.18 ('90. 7.23)	가족장 (6일장)	안국동 자택	안국동 자택 자택 앞 안동교회	충남 아산 (선영)
최규하 (崔圭夏)	'06.10.22 ('06.10.26)	국민장 (5일장)	서울대병원	서울대 병원 경복궁 앞뜰	대전 현충원
노무현 (盧武鉉)	'09. 5.23 ('09. 5.29)	국민장 (7일장)	김해 봉하마을회관	전국 102개소 경복궁 앞뜰	사저 인근 ('09.7.10)
김대중 (金大中)	'09. 8.18 ('09. 8.23)	국 장 (6일장)	세브란스병원 →국회	전국 184개소 국회 앞마당	서울 현충원
김영삼 (金泳三)	'15.11.22 ('15.11.26)	국가장 (5일장)	서울대 병원	전국 221개소 국회 앞마당	서울 현충원
노태우 (盧泰愚)	'21.10.26 ('21.10.30)	국가장 (5일장)	서울대병원	전국 14개소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경기 파주
전두환 (全斗煥)	'21.11.23 ('21.11.26)	가족장	세브란스병원	- -	-